

긴급공고 사유서

건 명	스피드개집표기 개량 제작구매설치(2차)	
계약방법	총액계약,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로 진행하고자 함. - 계약처-1110 ('23.2.15.)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 예산처-810 ('23.2.24.) 『2023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알림』 - 신속집행 대상예산: 10억원 이상 국·시비 및 자체 사업 (단위사업명 '(1~4재투자/운수/국비/23)비상게이트 표준화 개량' 포함됨) - '23년도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담당 :	직급 : 3급	성명 : 변진숙	(서명 또는
팀장 :	직급 : 3급	성명 : 최진수	(서명 또는
부서장 :	직급 : 2급	성명 : 이수영	(서명 또는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8일